

의사소통센터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설치한 의사소통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센터는 가천대학교 의사소통센터(이하, '센터')라 부른다.

제3조(소재) 센터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센터의 목적) 센터는 교양기초 분야인 글쓰기, 말하기, 읽기 등의 의사소통 교육과 연구 그리고 이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교양기초 교육과 학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①의사소통 교육에 관한 교과 교육 및 연구
- ②의사소통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③글쓰기 상담실 운영, 말하기 상담실 운영
- ④교안 개발, 교재 발간 등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⑤의사소통 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 3 장 조 직

제6조(구성) ①센터는 센터장, 의사소통 교과 전담교원, 연구원, 행정보조원 등으로 구성하며 본 센터의 운영을 위해 운영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센터는 운영 자문기구로 자문위원회를 둔다.

③센터의 운영 실무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④센터는 교과 운영부, 비교과 사업부 등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7조(자격 및 임명) ①센터장은 본 대학교의 교원 중에서 교육혁신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센터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8.12.20.)

②운영책임교수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혁신원

4-1-17~2 제4편 부속기관

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20.)

③의사소통 교과 전담교원은 본 대학교 교원 채용 절차에 의해 임용 후 가천 리버럴아츠칼리지에 배속되며 그 임기는 임용 시 계약기간에 따른다.(개정 2018.12.20.)

④연구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원은 센터장의 임명으로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⑤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본 대학교의 전임 교원 중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본 대학교의 학문 계열별, 전공별 균형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교육혁신원장이 임명한다. 그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20.)

⑥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본 센터의 운영책임교수와 의사소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본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12.20.)

⑦센터에는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직원, 조교 등 행정요원을 둔다.

제8조(직무) ①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②운영책임교수는 센터의 각종 사업과 실무를 주관한다.

③의사소통 교과 전담교원과 연구원은 센터에서 주관하는 교과목과 비교과 교육을 담당하고, 센터장의 지휘 아래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

④자문위원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⑤운영위원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⑥행정요원은 일반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소통 교과 전담교원과 연구원을 보좌한다.

제 4 장 위원회(개정 2018.12.20.)

제9조(자문위원회)(개정 2018.12.20.) ①센터에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심의, 자문기구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12.20.)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③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계획
2. 각 사업의 운영 방안
3. 예산과 결산에 대한 사항

4. 센터 규정의 개정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0조(삭제 2018.12.20.)

제11조(삭제 2018.12.20.)

제12조(소집과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학기 초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정기회의는 회의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제13조(회의록) 회의록은 회의 참석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5 장 (삭제 2018.12.20.)

제14조(운영위원회)(개정 2018.12.20.) ①센터에는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12.20.)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교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③위원은 운영책임교수와 의사소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본 대학교 전임 교원 중에서 센터장이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무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1. 센터 운영 세부 계획
2. 센터 교과목 운영과 실무에 관한 사항
3. 센터 비교과 사업의 운영과 실무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5조(삭제 2018.12.20.)

제16조(삭제 2018.12.20.)

제17조(삭제 2018.12.20.)

제18조(회의록) 회의록은 회의 참석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 6 장 재 정

제19조(경비 및 연구비)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연구비는 본교의 교비 지원금, 정부보조금, 용역사업비, 기부금, 센터 발간 교재 및 도서 인세 등 기

4-1-17~4 제4편 부속기관

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가천대학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21조(발전기금) 센터는 발전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22조(운영세칙)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